

[(주)신세계-서울특별시 중구]

공공이용시설 이용협약서

‘(주)신세계’와 ‘서울특별시 중구’은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이마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성 확보에 관한 시설로 조성된 “공연장 및 남산전망대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협약서를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이용협의는 신세계남산(장충동1가 56-85 외 33필지)에 조성된 “공연장”의 공공이용에 관한 대관 및 “남산전망대”의 이용 및 홍보를 위한 오픈행사에 관해 ‘(주)신세계’ 및 ‘서울특별시 중구’의 의무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무)

- ① ‘(주)신세계’와 ‘서울특별시 중구’는 본 협의를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‘(주)신세계’와 ‘서울특별시 중구’는 본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본 협의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3조(공연장 대관)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이마트부지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성 확보에 관한 시설로 조성된 공연장에 대하여 공공의 이용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관 사항을 정한다.

- ① 공연장의 대관 횟수는 연간 총 8회로 한다.
- ② 공연장의 대관 비용은 무상사용 연간 4회, 50% 감면 연간 4회로 한다.
- ③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연장 대관신청에 제한을 받는다.
 - 가.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- 나. “신세계 남산”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
 - 다. 종교의 포교, 정치적 목적의 행사
 - 라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
 - 마.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제4조(공연장 이용기간) 공연장의 이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10년간으로 하며, 기간연장은 이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상호 의견이 없을 시 자동 연장된다.

제5조(남산전망대 이용)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이마트부지 특별 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성 확보에 관한 시설로 조성된 남산 전망대에 대하여 공공의 이용 확보를 위해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- ① 운영시간 : 주말/평일 10:00~18:00
- ② 로비 프런트 운영 : 운영시간 내 안내원 상주 및 이용자 대응
- ③ 남산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를 확보하여 이용자 동선을 개별 확보한다.

제6조(남산전망대 홍보) 남산전망대에 대하여 공공이용시설임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사를 진행한다.

- ① 행사는 “신세계 남산”의 개관계획에 맞춰 진행한다.
- ② 행사계획은 “(주)신세계”에서 주관하며, 행사참여자는 “서울특별시 중구”에서 모집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‘(주)신세계’와 ‘서울특별시 중구’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은 ‘(주)신세계’와 ‘서울특별시 중구’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9조(준용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또는 그 밖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위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직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8월 31일

(주)신세계 대 표 손 영 식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

